

의안  
번호

2951

활동기간 : 20. 9. 15. ~ 21. 9. 14.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 분	성 명	선거구	위원회	정당	
위원장		홍 성 룡	송파3	도시안전건설	
부위원장		봉 양 순	노원3	환경수자원	
부위원장		양 민 규	영등포4	교 육	
위 원		김 정 태	영등포2	행정자치	
		박 기 열	동작3	도시안전건설	
		박 순 규	중구1	도시안전건설	
		송 아 량	도봉4	교 통	
		송 정 빈	동대문1	환경수자원	
		유 용	동작4	문화체육관광	
		이 광 호	비례	교 통	
		최 응 식	영등포1	도시안전건설	
		최 정 순	성북2	행정자치	
					더불어 민주당

**1.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 I

## 위원회 구성

### ■ 구성목적

-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 민족 삶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 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함.

### ■ 구성경위

-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민족정기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 일본은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상은 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
- 국내 일각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음.
-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  
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 민족 삶 깊숙이 파  
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 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 ■ 위원회 추진경과

- 20. 08. 12.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홍성룡 의원 외 16명 공동발의
- 20. 09. 09.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
- 20. 09. 15.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활동기간: 20. 9. 15 ~ 21. 3. 14)
- 21. 03. 04.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
  - 1차 연장(활동기간: 21. 3. 15 ~ 21. 9. 14)
- 21. 09. 14.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21. 10. 25 제303회 정례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 위원회 활동내역

- 제1차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회의개최('20.09.06.)
  - 내 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21.03.05.)
  - 내 용 :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민주시민생활교육과) 업무보고
-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규탄 집회('21.03.05.)
  - 내 용 : '다케시마의 날' 규탄 집회
- 제3차 일본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대회('21.06.15.)
  - 내 용 : 서울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함.

## **II.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 II

## 위원회 주요활동

###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1차)

- 일 시 : 20. 9. 15.(화)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직 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지역구	소속정당
위원장	홍성룡	도시안전건설	송파 3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봉양순	환경수자원	노원 3	
부위원장	양민규	교육	영등포 4	



(왼쪽부터 박순규, 송아량, 봉양순, 김정태, 박기열, 홍성룡, 최정순, 이광호, 최웅식, 유용, 양민규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2차)**

- 일 시 : 20. 9. 15.(화)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서울시의회 본관 3층)
- 안 건 :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등
- 참석대상 : 서울시 문화본부장,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  
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참석자	업무 보고 요지
<p>〈총 12명〉</p> <p>홍성룡 위원장</p> <p>봉양순 의원</p> <p>양민규 의원</p> <p>김정태 의원</p> <p>박기열 의원</p> <p>박순규 의원</p> <p>송아량 의원</p> <p>송정빈 의원</p> <p>유 용 의원</p> <p>이광호 의원</p> <p>최웅식 의원</p> <p>최정순 의원</p>	<p><b>I</b> <u>업무보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황 보고(서울시 문화본부)</li> <li>○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지원 계획사업 경과보고 등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li> </ul> <p><b>II</b> <u>질의 및 답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업무보고 및 관련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li> </ul> <p><b>III</b> <u>향후계획</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 실시 예정( 2021. 6 ~ 11월 )</li> <li>- 활용방안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 연차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22.상반기, 단기·장기 과제로 분류)</li> <li>-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li> </ul> </li> </ul>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전문가로 구성된 일제 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 예정
- 추진단 중심의 학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추진
- ‘학교 내 일제 잔재’ 자체 전수 조사 및 자료 수집
-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 조사 및 토론회 실시
- ‘학교 속 일제 잔재’ 전수조사 및 자료 수집 등



## ■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규탄 집회(3차)

- 일 시 : 2020. 03. 05.(화)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서울시의회 본관 3층)
- 주요내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 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램지어 교수를 후원해온 미쓰비시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의 전개를 결의
- 참석인원 :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왼쪽부터 송아량, 봉양순, 양민규, 유용, 김정태, 박기열, 홍성룡, 이광호, 최정순, 최웅식, 송정빈, 박순규 위원)

##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 활동기간 연장의견

-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부족한 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1년 9월 14일까지 연장함.

### ● 추진경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20. 3. 5)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20. 3. 5)

■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대회 개최

- 일 시 : 2021. 6. 15. (금)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특별위원회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7명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일본과 IOC는 '올림픽 정신'을 각성하고  
독도주권 침탈을 철회하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 결의문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도발행위임을 경고한다. 또한, 스포츠에 정치적 문제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이 같은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는 국제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며, 수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버티는 안하무인의 태도 또한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이웃 국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망언과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도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를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의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IOC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IOC가 일본정부의 꼭두각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태도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올림픽 정신과 목적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차별과 분쟁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 세계인의 축제의 장을 망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해야 할 IOC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그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21.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 **Resolution Condemning Japan's Encroachment on the Korean Territory of Dokdo**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warns that the Tokyo Olympic Organizing Committee's marking of Dokdo as Japanese territory on its official website is a provocative act that directly infringed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lso reiterate that such action runs counter to the Olympic spirit, which strictly forbids political interference in sports, and we strongly condemn it.

Since Dokdo is clearly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territory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Japanese government's behavior of encroaching on the Korean territory of Dokdo deserves international condemnation. It is clear that its arrogant attitude of refusing to rectify the wrong despite repeated complaints by the Korean government will als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eaceful and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ar from sincerely reflecting on the inhumane and depraved acts it committed to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the past wars of aggression, Japan has made reckless remarks and actions to distort and hide its history at every opportunity. The Tokyo Olympic Organizing Committee's encroachment on territorial rights to Dokdo is also an unforgivable act stemming from a wrong view of history, and all Koreans cannot condone this.

When it received protest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recommended that Dokdo be removed from the flag of the Korean Peninsula, saying, “It is inappropriate to link political issues with sports.” However, the IOC remains silent about Japan’s claim to Dokdo, which is contrary to the Olympic spirit and has brought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forced to ask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OC is a puppe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Tokyo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are completely undermining the Olympic spirit and purpose of contributing to world peace through sports. Furthermore, they are ruining the festival of people around the world by providing the causes of discrimination and conflict themselves, and the IOC, which has a role to coordinate this, is conniving.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quests an immediate apology and correction for the repeated Japanese invas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resolves as follows, declaring that it will stand firm against any provocations.

1.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encroaching on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by marking Dokdo as Japanese territory on the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map, and apologize for the repeated provocation.

1.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demands immediate correction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Tokyo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that undermine the Olympic spirit of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peace by separating sports from politics.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take all immediate and decisive measures against Japan's invasion of sovereignty over Dokdo.

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ogether with all Koreans, sternly warns against Japan's provocative actions against Dokdo and urges prevention of recurrence.

**2021. 6. .**

**Members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 **Ⅲ. 특별위원회 입법활동**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공동발의 조례안

연번	조례명	목적
1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 이바지하고자 함

※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

#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8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정태, 박기열, 박순규,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최웅식, 최정순  
의원(12명)

## 1.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9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정태, 박기열, 박순규,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유용, 이광호, 최웅식, 최정순 의  
원(12명)

## 1.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 등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44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정태, 박기열, 박순규,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최용식, 최정순,  
임종국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장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장) 시장은 자치구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최웅식,  
임종국 의원(17명)

## 1. 제안이유

-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총 12건  
업무보고자료 2건**

2020.8.13.(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홍성룡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 원 명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시의원	홍 성 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나선다

- 홍성룡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일본의 식민지배·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
- 특위 구성, 조례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완벽 청산’ 의지 피력

광복절 75주년을 앞둔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특위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

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 “최근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어 홍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 구성 결의안 전문 참조)
- 한편, 홍 의원이 특위 구성과 맞물려 동시에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

와 관련한 실태조사, 시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찬양하는 행위자 참여 제한,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2020.9.16.(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공식 출범

- 위원장 홍성룡 의원, 부위원장 봉양순·양민규 의원 선임
- 홍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 바로 세우겠다'
-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 되길 기대'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과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

중1), 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 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 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 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 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 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 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홍 위원장은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 홍 위원장은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홍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한 반민특위는 조례제정,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행정용어, 무의식속에서 사용하는 순일본말,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반민특위 활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첨부 : 사진자료>



- ▲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가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 부위원장으로 봉양순, 양민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왼쪽부터 박순규, 송아량, 봉양순, 김정태, 박기열, 홍성룡, 최정순, 이광호, 최웅식, 유용, 양민규 위원)

2020.10.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일본어 잔재' 청산 나선다

- 홍성룡 위원장, 일본어 잔재는 민족말살 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 된 것
- 진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잔재' 청산부터 시작해야

- 574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장 홍성룡)는 “진정한 친일반민족 행위 청산은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잔재’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어 잔재는 한·일간의 자연스러운 언어 접촉 과정에서 우리말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한 이른바 민족 말살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어 잔재가 우리 삶과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흥 위원장은 일본어 잔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순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음차어’를 꼽았다. 흥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순 일본어로는 짬뽕, 우동, 가라, 기스, 사라 등이 있다. 이는 초마면, 가락국수, 가짜, 흙, 접시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일본식 한자어로는 망년회, 익일, 가불 등이 있는데 이는 송년회, 다음 날, 선지급으로, 일본어 음차어인 모찌, 유도리, 만땅 등은 찹쌀떡, 윙통성, 가득(차다/채우다)로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건설 분야나 당구 등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노가다(→(공사판)노동자), 합바(→현장식장), 와쿠(→틀), 겐세이(→견제), 시네루(→회전), 다이(→당구대) 등 충분히 사용가능한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투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흥 위원장은 “인사동, 송도, 옥천, 원남동, 관수동 등과 같은 지명도 일제가 우리의 얼과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식으로 바꾸거나 자기들 멋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라면서, “지명 변경에 따른 혼선과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핑계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일본식 지명들도 홍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드시 우리 고유 이름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흥 위원장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에도 몽리자(→수혜자), 사력(→자갈), 계리(→회계처리), 관창(→노즐) 등과 같은 일본어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일본어 투 용어는 대개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반드시 순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홍 위원장은 “우리는 광복 직후부터 꾸준히 국어 순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상당수 일본어 잔재를 정리했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인 자리나 특정 분야에서 일본어 투 용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정부나 자치단체, 국민들이 유난히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과 같은 기념일의 10년 단위가 되는 해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홍 위원장은 “매번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과 국민들의 무관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적어도 행정용어에서 만큼은 일본어 잔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첨부1 :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

구분	일본어 투 용어	우리말 표현	일본어 투 용어	우리말 표현
일본어	가라	가짜	가오	체면
	가타	불량배	구사리	핀잔
	기스	흠	나가리	유찰
	나라시	고루 찌기	나리비	줄 서기
	노가다	(공사판) 노동자	모치	참쌀떡
	빼끼	(손님) 끌기	사라	접시
	소데나시	민소매	시다바리	보조원
	아타라시	새것	야미	뒤틀거래
	에리	깃	엔꼬	바닥(남)
	와쿠	틀	우와기	윗도리
	유도리	용통	이지메	(집단) 괴롭힘
	지라시	선전지	헤라	(구둣)주걱
	호로	덮개	후카시	폼제기
일본식 한자어	망년회	송년회	거래선	거래처
	견습	수습	중지부	마침표
	모포	담요	대절	전세
	고수부지	둔치	도합	합계
	구좌	계좌	보험세	주춤세
	노견	갓길	불입	납입
	가불	선지급	고참	선임
	가처분	임시 처분	다반사	예삿일
	마대	포대/자루	수취인	받는 이
	익일	다음 날	잔고	잔액
	가봉	시침질	견양	본보기
	견출지	찾음표	구보	달리기
	급사	사환	기라성	빛나는 별
	노견	갓길	대금	값
	대절	전세	보험세	주춤세
	소사	사환	수순	차례
	수입고	수입량	수출고	수출량

	십팔번	단골 노래	양생	굳히기
	제전	잔치	하구언	강어귀 득
	지참	지니고 음	취조	문초
구분	일본어 투 용어	우리말 표현	일본어 투 용어	우리말 표현
일 본 어 음차어	모찌	참쌀떡	쓰키다시	결들이찬
	유도리	용통성	아나고	봉장어
	나가리	무산	가라	가짜
	나와바리	구역	간지나다	멋지다
	단도리	단속/채비	무테뽀	막무가내
	땡땡이	물방울	이빠이	많이/가득
	만땅	가득 (차다/채우다)	곤조	고집/근성
	쇼부	결판	기스	흠/흠집
	와사비	고추냉이	분빠이하다	나누다/각자내기하다
	찌라시	전단지/광고지	사시미	생선회
	가오	체면/무게	와꾸	틀
	쿠사리	핀잔	지리	맑은탕
	노가다	막노동/막일	뽀록나다	들통나다
	대뽡	대장	비가번쩍하다	번쩍번쩍하다
	나시	민소매	뽡사리	실수/음이탈/헛발질

2020.12.17.(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 봉양순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부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에 시효 있을 수 없어”
- “‘반민특위’ 활동과 연계해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해 민족정기 바로 세우겠다.”

-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반민특위 봉양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은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어 봉 부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활동과 연계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또, 봉 부위원장 “궁극적으로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가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파급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2020.12.18.(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 상임위 통과

- 양민규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부위원장, “공교육 현장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일제잔재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 두고만 볼 수 없어”
- “미래 주인공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 갖는데 도움 되길 기대”

-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양민규 반민특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어 “학교 현장에도 반장, 조회, 주변, 당번, 경례 제도, 방위나 순서 표시가 들어간 학교명 등 청산하지 못한 일제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현재도 학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양 부위원장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공교육의 현장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제잔재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단편적·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의 왜곡된 식민사관과 일제잔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또, “본 조례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2020.12.22.(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 본격 시동

- ‘친일반민족행위청산 지원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일제히 본회의 통과
- 최웅식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은 정파와 이념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가자는 것”
- 이광호 위원,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활동, 전국적으로 파급돼 국회 차원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 되길 기대”

-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앞서 지난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이날 반민특위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이날 통과된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과 교육감은 친일·일제잔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친일·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날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반민특위 최웅식 위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 깊숙이 친일·일제잔재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복 직후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최 위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친일·일제잔재 청산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정파나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친일·일제잔재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 최 위원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일제잔재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평가받게 함으로써,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이광호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해방 이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의 잔재는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 “친일·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뜻깊어야 할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 광복 75주년 등의 기념행사가 오히려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 이어 이 위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들이 전국 시·도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친일·일제잔재 청산이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시와 교육청에 반드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최근 타 시·도에서도 친일·일제 청산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인 상호 협력·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20.(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독립운동가 능멸하고 대한민국 헌법 부정한 윤서인 엄벌 촉구

- 반민특위, 윤씨 후원금 출처, 일본 자금 여부 조사·수사 필요성 제기
- 친일·매국으로 축적한 부 대물림 받은 삶을 소위 ‘열심히 산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 해석의 문제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
- 윤서인 같은 사람 나오지 않도록 ‘친일반민족행위청산’ 관련 법안 조속히 마련해야”

- 최근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장 홍성룡)는 “윤씨의 막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의 극치”라고 규탄하고, “독립운동가를 능멸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윤씨를 엄벌에 처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 앞서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걸까?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며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다.
- 이에 대해 반민특위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제대로 가동돼 친일청산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러한 반민족적인 언동은 없었을 것”이라며,
-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친일한 사람들은 부를 대물림 받아 땡땡거리며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삶은 피폐했고, 후손들은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다. 윤씨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홍 위원장은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윤씨가 올린 친일파 후손의 집은 친일파 이해승 손자의 집으로 추정된다”며, “2009년 11월에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보면, 이해승은 일제강점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당시 조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작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 조선귀족관광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 귀족을 대표해

일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묘소도 참배했다. 1911년에 일제로부터 고액(당시 16만 8000엔)의 은사공채를 수령했으며, 1912년에는 ‘종전(한일병합전) 한·일관계의 공적이 있는 자’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 총독부 최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1940~1941년 전시체제 최대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참여하는가 하면 1942년에는 조선귀족회 회장 자격으로 일제 육·해군에 각각 1만원씩의 국방헌금을 조선총독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등 수많은 매국행위를 일삼은 친일파의 거물이다”라고 설명했다.
- 홍 위원장은 “우리민족과 독립운동가를 폄박하고 친일과 매국으로 축적한 부를 대물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친일파의 후손을 두고 소위 ‘열심히 산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친일·매국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윤씨의 언동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요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막말을 일삼으면서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윤씨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한

후원금을 자랑하고 있는데, 윤씨 같은 사람에게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놀랍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후원금의 출처가 친일반민족단체 또는 일본 자금이 아닌지를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 홍 위원장은 끝으로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제2, 제3의 윤서인이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친일반민족행위청산’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3.5.(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램지어 후원해온 미쓰비시 불매운동 나섰다

- 램지어 위안부 관련 논문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 강력 규탄
- 박기열 위원, 램지어 후원해온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필요성 제기
- 박순규 위원,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을 전 세계적인 'No Japan'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장 홍성룡)는 5일 제2차 회의에 앞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램지어 교수를 후원해온 미쓰비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자고 결의했다.

-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램지어는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으며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을 받은 인물이다. 공식 직함은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인데 그 자리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1970년대에 150만 달러의 기부금을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고, “램지어는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터무니없는 거짓 논리로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기열 반민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의 논문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마저 저버린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이어 박 위원은 “미쓰비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극우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램지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와 더불어 반민특위 박순규 위원(더불어민주당·중1)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당시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No Japan’ 운동을 벌인 결과 단순히 수출규제에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 “일본이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없어질 때까지 미국에서 한인교포들을 중

심으로 벌이고 있는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이 전 세계적인 ‘No Japan’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 한편, 이날 반민특위는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특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2021.3.8.(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본격 착수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시의회 반민특위 회의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 추진계획 업무보고
- 홍성룡 위원장,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원년 만들자”
-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의지가 중요, 역사적 사명감 갖고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합심해야”

-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 이날 업무보고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 시 문화본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인물·유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애국·항일 관련 기록물 제작 및 전시·상영, 역사강좌, 역사 현장 체험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 될 예정이다.
  
- 시 문화본부는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구체적 시행계획도 보고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역사의식 고취’, ‘미래세대 역사교육 강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 세부 추진계획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 수집, 인식조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개최,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및 교육용어 우리말 순화사용 홍보, 일제잔재 청산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보고했다.

- 업무보고 직후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역사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 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 이어 “잊을 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대한 망언 역시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광복 직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불행한 역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올해를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 홍 위원장은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 1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단체장과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귀찮은 일거리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만 미루지 말고 행정국 등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나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 또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21.6.15.(화)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장수 : 9장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 서울시의회,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강력 규탄

- ‘일본과 IOC의 독도에 대한 이율배반적이고 몰염치한 행태’ ...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IOC와 주한일본대사에 전달

- 15일 서울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 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

위원회’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결의문을 통해 “올림픽을 이용한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 이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행위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 올림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버티는 안하무인의 태도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IOC가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IOC가 이번 일본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IOC가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러면서 “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정치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면 IOC는 일본의 독도 침탈 만행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 홍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이 자국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삭제

하고, 두 번 다시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올림픽 불참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호소했다.

-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IOC,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업무보고 자료**

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  
청산특별위원회

I·SEOUL·U  
1201 400 4000

# 주요업무보고

2021. 3.

문 화 본 부

## 주요업무보고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

# 1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1.7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청산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1.1.7. 시행)

### 조례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정의(제2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 하는 것을 말함
  -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2.10.22. 시행)」 제2조에 따른 행위 (※ 붙임1)
- 시장의 책무(제4조) : 역사적 진실 확인을 위한 시책 마련
- 실태조사(제5조) :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 사업추진(제6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위원회 설치(제7조) : 청산 지원 시책 수립, 청산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자문

### 추진방향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범국가적인 과제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방향설정,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춰 추진
- 서울지역의 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친일 관련 유물·인물·기록

물 및 건축물 등 사례를 수집하고 구체적 청산 지원방안을 모색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친일 관련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조사·연구분야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학술연구활동 등
- 교육·홍보분야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연구 결과 마련한 청산 지원방안에 따른 교육, 홍보 등

- 추진방법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추진이 가능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 공모 지원
- 지원규모 : 조사 및 청산지원 사업별 50백만원 이내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이내 ('21년 추경을 통해 확보)
- 추진일정(안)

<p>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 (’21.6월~11월)</p>	<p>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후속조치 계획수립(연차별) (’22.상반기)</p>	<p>친일반민족행위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청산 지원 추진 (’22.9월~’23.4월)</p>
<p>• 친일 관련 유물, 인물 등 현황 실태조사</p>	<p>• 청산 지원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p> <p>• 청산 지원 후속조치 추진 계획 수립</p>	<p>• 영상, 책자 등 홍보자료 발간, 배포</p>
<p>(관계기관 또는 단체)</p>	<p>(서울시 역사문화재과)</p>	<p>(관계기관 또는 단체)</p>

## □ 세부 추진계획(안)

### ① 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

- 추진방향 :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 추진
- 추진일정 : 2021. 6 ~ 11월 (6개월)
- 조사대상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행위
  - 서울 지역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친일 관련 유물·인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의 문화유산
- 추진방법
  - 관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통한 사례수집
  -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등 역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 등 청산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 시책 자문 등
- 활용방안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 연차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22.상반기, 단기·장기 과제로 분류)

### ② 친일반민족행위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청산 지원 추진

- 추진방향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후속조치로 분류된 장·단기 과제별 사업 추진
- 추진일정 : 2022. 9 ~ 2023. 4월 (8개월)
- 추진내용 : 애국, 항일 관련 영상·전시·역사현장 체험 등 콘텐츠 개발
- 추진방법



(서울) 친일문학 낭독 행사  
(17.5월)

- 전문용역을 통해 대시민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 서울역사편찬원 역사강좌 등 추진
- **활용방안 : 친일반민족행위 등 청산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



(경기)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캠페인 ('20.12월)

## **향후일정**

- 청산 지원 시행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계획 수립 : '21.3~4월
- 실태조사 용역 예산 편성(추경) : '21.4월 이후
- 친일반민족행위 실태조사 용역 : '21.6~11월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 : '22.상반기
-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청산 지원 용역 : '22.9~'23.4월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요

- 근거 :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4.3.22 공포)
- 구성 : 대통령 소속으로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초대 위원장 : 강만길)
- 활동기간 : 2005. 5. 31. ~ 2009. 11. 30.
- 활동내용 :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 수집, 관련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사료 편찬
- 활동결과
  - 친일인사 1,005명 공개(이완용, 민영휘, 최남선, 이광수, 현제명 등)
    - ※ 분야별 구분 : 정치(383명) / 관료, 군인, 경찰 등 통치기구(272명) / 언론, 종교 등 경제·사회(186명) / 문화(84명) / 해외(81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기록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발간 (2009)

○ 서울지역의 친일반민족행위자(예시)

인물명	친일 내용
 임선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서 내부대신을 맡아 대한제국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 협력</li> <li>○ 1908년에는 탁지부의 수장인 탁지부대신에 임명되어, 일본 소유의 군과 철도 용지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등 친일 행적 확인됨</li> </ul>
 이재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왕족,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귀족 작위를 받음</li> <li>○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 궁내부대신으로 일제의 뜻에 따라 고종을 협박하는 등 친일 행적 확인됨</li> </ul>

'21.1.7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요약)

- ◆ 제1조(목적) :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제2조(정의)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 가. "공공장소"란 제4조 기관(1~3호)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 나. "공공행사"란 제4조 기관(1~4호)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 제4조(적용대상 기관)
  1. 市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 제5조(시장의 책무)
  - ①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소지, 판매·전시 행위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함
  -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
  - ④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 제7조(위원회설치) : 시책수립 및 상징물 판단 자문(비상설 11인 이내)
- ◆ 제8조(위원회구성) : 市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디자인, 일제강점기 역사전문가

※ 서울시의회 공식블로그 홍보자료



## 추진단계

- [알림단계] 조례제정 알림 및 실태조사 시행
  - 적용기관 대상 조례제정 알림 및 홍보(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이미지 활용)
  - 적용기관 대상 최근 3년간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논란사례 실태조사
- [준비단계] 시책수립 방향설정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 → 기획회의
  - 조례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방향 및 “상징물의 범주” 등 자문
  - 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사례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 [시행단계] 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한 운영종합계획 수립·시행
  - 조례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배포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논란시 위원회 안전상정 절차 및 기준 마련 등

## 추진내용(안)

### 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총 9명(간사 미포함)

- 설치 : 디자인정책과에 비상설 설치, 간사는 디자인정책과장
- 구성 : 市 공무원 1명, 비영리 민간(학교, 학회, 연구소 등) 3명, 일제강점기 전문가 3명(역사전문가 강화), 디자인 전문가 2명
  - ※ 비영리 민간분야 중 국제관계 전문가 1명 포함
- 운영 :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사회적 논란 또는 논란소지가 예견되는 경우, 비상설로 운영

### ② 운영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주요골자

- “공공사용”의 3가지 유형별 관리주체 지정

※ 관리주체 : 자체점검(체크리스트) 및 현장감독(위반시 사용제한, 퇴장요구 등)

**유형1** 공공기관이 공공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 행사 부서(기관)가 관리감독

- 예시 : 디자인정책과 주최 서울광장 행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 보건환경연구원 주최 광화문광장 행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디자인재단 주최 다목적홀(실내) 행사      서울디자인재단

**유형2** 공공기관이 민간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 행사 부서(기관)가 관리감독

- 예시 : 디자인정책과 주최 코엑스 행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 보건환경연구원 주최 킨텍스 행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디자인재단 주최 63빌딩 행사      서울디자인재단

**유형3** 민간이 공공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 공간관리 부서(기관)가 관리감독

- 예시 : 대한체육회 주최 서울광장 행사      서울시 총무과
- 대한불교조계종 주최 잠실운동장 행사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마라톤 협회 주최 여의도 한강공원 행사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유형4** 민간이 민간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 동 조례 적용대상 아님

- 예시 : 대한체육회 주최 킨텍스 행사

○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확정 배포

- 자체점검 및 현장감독을 위한 항목별 체크리스트 포함 가이드라인 배포

○ 위원회 안건 상정 절차 및 기준 등 마련

-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을 통해 최종 심의·판단

□ 향후계획

- 적용기관 대상 조례제정 알림 및 실태조사 시행 : '21.3월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21.5월
  - 역사전문기관, 디자인단체, 연구소, 대학 등에 전문가 추천의뢰
- 운영종합계획 수립 : '21.8월
  - 현장 가이드라인 및 운영종합계획의 위원회 심의·확정
- 적용기관 배포 시행 : '21.9월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당초부터 지켜야 할 것은  
혁신미래교육

# 주요업무보고



2021. 3.

서울특별시교육청

I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지원 계획

참고자료1. 2021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지원 계획

1-1. 2021 민주적 공동체 문화 기반 학교문화 비로세우기 계획

1-2. 2021 교가 지원 「학교歌 좋다」 운영 계획(안)

참고자료2. 일제 잔재 용어 사용 현황 모니터링 결과('20.10.) · 110

# 1

##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지원 계획

### □ 사업 개요

- 목적: 학교 내 일제 잔재의 청산으로 미래지향의 역사교육 강화
-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875호, 2021.1.7.)
- 주요 내용
  - 학교 내 공론화를 통한 자체 모니터링 및 추진단(전문가) 현장 조사
  - 일제 잔재 청산 설명회, 교육적 활용 방안 컨설팅,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보고회 등 일제 잔재 청산 활동 지원

###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일제 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운영	연중	1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실시	'21.3~5.	초·중·고
학교 내 일제 잔재 전수 조사	'21.3~7.	초·중·고
일제 잔재 청산 지원	'21.8~10.	15교
학교 교육 용어 우리말 순화 사용 홍보	연중	초·중·고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결과 보고회	'21.11.	1회

### □ 추진 계획

- 전문가로 구성된 일제 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 '21.3.~12.
- 추진단 중심의 학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21.3~12.
- ‘학교 내 일제 잔재’ 자체 전수 조사 및 자료 수집: '2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가) 친일경력자가 작사 또는 작곡한 교가 여부</li> <li>· (학교 상징물) 교표 등 일제 잔재 잔존 여부</li> <li>· (학교 시설물) 동상(흉상), 공덕비(송덕비), 건물명 등 일제 관련성 여부</li> <li>· (학교 생활) 학교 교훈의 일제 관련성, 학생 징계 항목에 항일운동 탄압 항목 잔존 여부, 일제 잔재 용어 등</li> <li>· (기타) 공개 장소에 일본인 학교장 사진 게시 여부</li> </ul>
---

- 학교별 토론회(학교 구성원, 동문, 지역사회 등)를 통한 공감대 형성: '21.3.~5.

- 추진단 중심 학교 내 일제 잔재 현장(자료)조사: '21.5.~7.
- 일제 잔재 청산 예산 지원 및 실행: '21.7.~
-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교육 용어 우리말 순화 사용 홍보: 연중

## □ 추진 실적

- 2019년 구로중학교의 교가 지원(470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제7684호, 2020.9.24)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875호, 2021.1.7.)
-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수립('20.10.19.)
- 일제 잔재 용어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20.10.21.~10.27)
- 2021 민주적 공동체 문화 기반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실시('21.2.)
- 교가 지원 사업 '학교歌 좋다' 업무 협약 및 사업 추진 (예정)('21.4.)

## □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의 어려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 대상 사업 조정 가능
  -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조정, 규모 축소 등
-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예산 미확정(현재 편성된 예산이 없음)
  - 전수 조사 결과 및 지원 희망 학교 수에 따라 예산 필요
  - 학교에서 자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 필요

민주시민교육 기반으로서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I 추진 현황 및 필요성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의 국가적 노력과 연계하여 교육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일제 잔재 학교 상징물(교가, 교표, 교기, 교목 등) 및 조형물, 시설물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수조사 후 교육적 활용 방안 수립 필요
- 교육계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요구
- 일제 잔재 청산 과정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통한 민주시민육성

### II 추진 목적

- 2019년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학교 내 일제 잔재의 청산으로 미래지향의 역사교육 강화
- 교육공동체가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일제 잔재 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 일제 강점 및 군사문화 잔재 청산을 통한 문화·역사 바로 세우기

### III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제7684호, 2020.9.15)
-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3-1-1 화해와 공존의 평화·역사·통일 교육
- 2020 민주시민교육 기반으로서의 역사교육 기본 계획

## IV 추진 방침

### □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과정

준비	공감대 모색	지원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본 계획 수립</li><li>· 인식조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li><li>· 2020.11.~12.</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수조사 실시</li><li>· 일제 잔재 청산 선언식(6월)</li><li>· 2021.1.~6.</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제 잔재 청산 지원</li><li>·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성과 보고회(12월)</li><li>· 2021.7.~12.</li></ul>

※ 2020년 공감대 형성을 시작으로 중장기 방안 모색

### □ 운영 방향

- 역사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제 인사에 대한 기준은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반민족행위 관련 사료집에서 제공한 내용을 준용
- 학교 내 일제 잔재 전수조사 전후 학교 구성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동문 등 교육공동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상징물 부각 차원을 벗어나 일제 관련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둠
-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에서 현장 조사 후 종합적인 청산 및 활용 방안 마련
- 학교 현장의 일제 잔재 용어 청산 관련하여 교육부 차원에서도 협조하여 실시하도록 시도교육감 협의회 의제 제출
-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가 작사작곡 지원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교육적 활용 방안은 본청 각 사업부서별과 협력하여 추진

## 비전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민주시민 기반**으로서의 **미래세대의 역사교육 강화**

## 목표

**교육공동체**가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청산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 추진 전략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학교 안·밖 공감대 형성

- 일제 잔재 청산 추진팀 구성·운영
- 인식조사 및 학교별 자율 토론회
- 학교 내 일제 잔재 전수조사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일제 잔재 청산 학교  
 활동 지원

- 일제 잔재 청산 설명회 (희망교)
- 단위학교 일제 잔재의 교육적 활용 방안 컨설팅
- 동문, 지역사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교 활동 지원

미래지향 역사교육을 위한  
 일제 잔재 청산 및  
 교육적 활용

- 일제 잔재 청산(예산 지원 및 모니터링)
- 일제 잔재 청산을 주제로 한 교원학습공동체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 일제 잔재 청산 성과보고회 개최

## VI 세부 추진 계획

### 1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학교 안·밖 공감대 형성

#### □ 추진단 구성·운영

- 운영 기간: 2020. 11. ~ 2021. 12
- 역할: 기본 계획 검토 및 자문, 학교 내 사업 자문 등
- 구성: 역사교육 학자, 교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

#### □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 조사 및 토론회 실시

- 기간: 2021. 3. ~ 2021. 5.
-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원과 학생(학생자치회)
- 주제: 학교 일제 잔재 청산과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
- 목적: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조사 내용: 의견 제출자가 생각하는 일제 잔재의 개념 등
- 토론 방법 (예시)
  - 학생: 학급자치회의, 관련 동아리 활동 등
  - 교직원: 교직원회의, 학년 회의, 교과 회의, 교원학습공동체 등
  - 학부모: 학부모회 등

#### □ '학교 속 일제 잔재' 전수조사 및 자료 수집

-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전체
- 목적: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하여 '미래역사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방법
  - 1단계: (학교)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 자료 조사(2021. 3. ~ 5.)
  - 2단계: (추진단)전문가 그룹의 구체적인 현장(자료)조사(2021. 5. ~ 7.)
- ※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는 우선하여 청산 작업을 유도하고 예산 지원



## 조사 항목

- (교가) 친일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한 교가 여부
- (학교 상징물) 교표 등 일제 잔재 잔존 여부
- (학교 시설물) 동상(흉상), 공덕비(송덕비), 건물명 등 일제 관련성 여부
- (학교 생활) 학교 교훈의 일제 관련성, 학생 징계 항목에 항일운동  
탄압 항목 잔존 여부, 일제 잔재 용어 등
- (기타) 공개 장소에 일본인 학교장 사진 게시 여부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 내용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하되 과정 자체가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의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 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권장함

### □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 수립에 반영

- 전수조사 및 자료 수집 결과를 추진 계획에 반영
-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상 학교 설명회, 학교지원 방안 마련
- 청산을 원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청산 과정 및 결과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

## □ 학교 대상 설명회 개최

-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설명회 개최
  - 관리자 연수 시 교육 현장 일제 잔재 전수 조사 협조 안내(2021. 1.~2.)
  - 일제 잔재 청산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설명회 개최(2월)
-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선언식(6월)
  - 주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자유 주제 공모 선정
  - 일정 및 장소(예정): 2021. 6.
  - 내용: 선언문 낭독, 일제·항일음악회, 강연(추진단 활동 중간 보고) 등

## □ 교육적 활용 방안 컨설팅

- 교원학습공동체 및 학생동아리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학교 현장의 일제 잔재 용어 청산 계획 수립 지원
  - 학교생활, 학생생활규정 내 일제 잔재 용어 청산
  -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학교 현장 일제 잔재 용어 청산 방안 모색

## □ 동문,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확산

- 일제 잔재 청산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추진단 구성
  - 구성: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학생, 동창회 등
  - 기간: 2021. 3. ~
- 추진단 중심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토론회 실시
  - 구성: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학생, 동창회 등
  - 기간: 2021. 3. ~ 6.
  - 결과 보고: 청산 결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2021. 6. 30.까지)

### □ 일제 잔재 청산 예산 지원

- 대상: 일제 잔재(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 조형물)가 있는 학교 중 청산이나 교육적 활용이 결정된 학교
- 기간: 2021. 7. ~ 필요시 까지
- 예산: 총 5,000만원(50교)
  - 교당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되 학교별 청산 규모에 따라 변동 지원
  - 교가는 작사·작곡 지원(체육문화건강예술과와 연계)
  - 조형물·사진은 설명서 부착 또는 이전 비용 지원

### □ 일제 잔재 청산 주제 동아리 지원

- 교원학습공동체 및 학생동아리 운영(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과 연계)

### □ 일제 잔재 청산 성과 보고회 개최

- 학교 내 일제 잔재 조사 중간 보고회
  - 일시: 2021. 8. 15.
  - 내용: 학교 내 일제 잔재 실태조사 결과, 청산 대상 학교 등 결과 공유
    - ※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선언식과 연계 운영 가능
  - 기타: 광복절(8.15) 기점 보고회 추진으로 홍보 극대화
-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성과 보고회 (12월)
  - 일시: 2021. 12.(※조사 및 청산 사업 1차 완료 후)
  - 내용: 교육 현장 일제 잔재 청산 결과 및 활용 방안

## 4 주요 과제 추진 일정

구분	사업명	추진 일정												비고				
		2020년			202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교 안·밖 공감대 형성	일제 잔재 청산 추진팀 구성·운영																	교육청
	인식조사 및 학교별 자율 토론회																	학교
	학교 내 일제 잔재 전수조사																	학교 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 학교 활동 지원	일제 잔재 청산 설명회																	학교 교육청
	단위학교 일제 잔재의 교육적 활용 방안 컨설팅																	교육청
	동문, 지역사회 등 공감대 확산 활동 지원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및 교육적 활용	일제 잔재 청산 (예산 지원 및 모니터링)																	학교
	일제 잔재를 주제로 한 교원 및 학생 동아리 활동																	학교
	일제 잔재 청산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청

## VII 기대 효과

- 학교 내 일제 잔재 파악·청산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 기반 마련
- 일제 잔재 청산 활동을 통한 민주적 학교 문화 여건 조성
- 일제 강점 및 군사문화 잔재 청산을 통한 문화·역사 바로 세우기



## 1-1. 2021 민주적 공동체 문화 기반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 학교 생활 속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통한 2021 민주적 공동체 문화 기반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운영 계획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I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7684호, 2020.9.24.)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875호, 2021.1.7.)
-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3-1-1 화해와 공존의 평화·역사·통일 교육

## II 추진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의 국가적 노력과 연계하여 교육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일제 잔재 학교 상징물(교가, 교표, 교기, 교목 등) 및 조형물, 시설물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수 조사 후 개선 방안 수립 필요
- 교육계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새로운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조성 요구

## III 목적

- 성찰, 존중, 자율 등의 민주적 공동체 문화가 바탕이 된 일제 잔재 청산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 사회 참여, 비판적 성찰, 민주적 의사 결정 등 민주시민교육 경험
- 교육공동체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현황 파악 및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일제 잔재 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 교육 현장에서 유·무형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및 학교역사 바로 세우기

## IV 방침

-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추진
- 역사적 논란 및 학교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에 대한 기준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관련 연구자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준용
- 학교 내 일제 잔재 전수 조사 결과 제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에서 현장 조사, 컨설팅, 종합적인 청산 및 활용 방안 안내
-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동문 등 교육공동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청산 사업 추진
- 중·장기적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및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캠페인 전개

## V 세부 추진 계획

### 1 교육청 운영 계획

#### ①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운영

- 운영 기간: 2021. 3. ~ 2022. 2.
- 구성: 역사교육 학자, 교원, 시민단체 등 10명 이내
- 역할: △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추진 계획 및 실행 관련 자문 △ 청산 대상 선정 및 희망 학교 컨설팅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 관리자(학교장) 연수 시 전수 조사 협조 안내
- 민주시민 기반 역사교과연구회 운영 지원 *\*별도 계획 참고*
  - 기간: 2021. 3월 ~ 12월 (※ 공모·선정: 2021. 3월 예정)
  - 구성: 1팀 당 초·중·고 교원 5~10명 내외, 학교급별 혼합팀 구성 가능

- 선정 학습공동체 수: 3팀 - 예산 지원: 공동체당 2,500천원
- 내용: 일제 강점기 역사 및 독립운동 관련 교수학습자료, 계기교육자료 개발 등

### ③ '학교역사 바로 세우기' 지속적 지원

-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공유 마당
  - 일시: (1차) 2021. 8월 중, (2차) 2021. 12월 중
  - 내용: 학교 내 일제 잔재 조사 결과, 청산 결과 및 교육적 활용 방안 공유 등
- 지속적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작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 대상: 희망 학교
  - 기간: 2021. 5. ~ 12.
  - 내용: 학교 현장의 일제 잔재 용어 청산 계획 수립 지원 등

## 2 단위 학교 운영 계획

사회적 공감	사회 참여	비판적 성찰	민주적 의사 결정
<b>민주시민교육</b> 관점에서 학생주도, 교과연계, 교육공동체 등 토론 활동 추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 내 일제 잔재' 발굴·수집	학교 일제 잔재 청산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활성화	학교 간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 ① **공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토의·토론

- 기간: 2021. 3월 ~ 12월
- 주제: 학교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등
- 토론 방법

-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 중심 공론 활동 : 온/오프라인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 추진
- 교과 연계 토론 활동 : 교과 수업 연계/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연계
- 교육공동체 주도 활동 : 교육과정 대토론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바로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의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 유·무형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방안(예)

- ① 교가: ①친일파 작사, 작곡 교가 ②시대에 맞지 않는 교가 등 교체 지원 예정<sup>별도 계획 참고</sup>
- ② 교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교표 교체 추진
- ③ 학교 시설물(구령대): ①시설 청산 / ②용도 청산 / ③용어 청산, 3가지 유형 청산 추진
- ④ 학교 문화(일제 잔재 용어 사용): 일제 잔재 용어 순화 사용 안내 및 캠페인 등
- ⑤ 일본인 학교장 사진: 사진 철거 및 철거 후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 등
- ⑥ 학생생활규정: 자체 점검을 실시 후 부적절한 내용, 혹은 용어가 있는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 VI 기대 효과

- 민주적 공동체 문화 기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과정에서 민주시민역량 함양
- 학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및 학교역사 바로 세우기

## VII 행정 사항

### ○ (학교) 학교 내 유·무형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조사 결과 제출

- 제출 기한: 2021. 4. 30.(금)까지
- 제출 내용 및 방법: [서식1], 자료집계시스템

※용량 초과 시 담당자 메일([ihsmllove@sen.go.kr](mailto:ihsmllove@sen.go.kr))로 제출

### ○ (학교) 학교 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결과 제출

- 제출 기한: 2021. 8. 31.(화)까지
- (※8.31. 제출 이후 청산 결과 내용이 변경된 학교는 2021. 12. 31.(금)까지 2차 제출)
- 제출 내용 및 방법: [서식2], 자료집계시스템

[서식1]

## 학교 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 결과

본 현황조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시하는 『2021 민주적 공동체 문화 기반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① 교육 현장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현황 파악 및 청산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역사인식 고취, ② 교육현장의 유·무형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통한 학교역사 바로세우기입니다.

현황을 조사하여 추후 일제강점기 잔재 유무 파악 및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 그 교육적 활용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shtet1>: 학교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로 현황을 그대로 제출, 예시를 참고하되 없는 경우 x표시

학교명	소재지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별 현황 (유형별 유무)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shtet2>: 이미지 첨부(※용량 초과시 담당자 메일(ihsmlove@sen.go.kr)로 제출)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서식2]

학교 내 월제강종기 식원전자 정산 현황 결과(2021. 8)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 생활지원부   연락처 264-8889				
*별첨하는 금액 누계 페이지나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여백분할 금지!				
항목	표제명			
	예산구분	연말잔액, 결산, 잔액지출, 잔액회계잔액	이월 잔액(잔액, 결산, 회계)	비고
교각				
교문				
강연장				
학교 부속	일제 강제 징용			
	학생회관			
	일제강종기 식원전자 정산			

## 참고1

##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의 종류 및 순화어(안) 안내

### ○ 명칭/용어/언어 영역

- 우리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다수 존재함

일제 잔재	이유(근거)	순화어(안)
반장, 부반장	일제시대 급장(級長) 혹은 반장(班長)은 학급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주로 담임교사에 의해 지명되어 담임교사의 대리자로 활동함. 일본에도 급장(級長)이 있었으나 패전 이후 명칭이 학급위원(學級委員)으로 바뀜. 학교 현장에서 회장, 부회장 등으로 대부분 교체되었으나 습관적으로 일상용어로 사용 중인 경우가 다수 있음	회장, 부회장, 학급대표 등
훈화	‘훈화’는 상사가 부하에게 ‘훈시’한다는 일제 강점기의 군대 용어로 감시와 통제를 위해 사용함	덕담, 도움 말씀
파이팅	학생들이 응원할 때 많이 쓰는 ‘파이팅’은 일본군 출전 구호. 그 유래는 권투경기 시작을 알리는 ‘Fight(파이트)’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화이또’라는 군인 출신 구호로 부른 데서 찾을 수 있음	잘하자, 힘내, 아리아리
방위, 순서표시 들어간 학교 이름	일제는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제7호」(경성부의 동, 정, 의 명칭과 구역공포-동수186개)를 중심으로 당시 서울 지역에 해당하던 경성부의 지명을 식민통치에 유리하도록 대대적으로 개편. 일제강점기 방위작명법이란 식민지 통치편의를 위해 학교 이름에 동서남북의 방위명을 사용한 것	학교 이름 바꾸기
간담회	‘간담회’는 일본식 한자어(懇談會:こんだんかい)를 한글로 표기한 낱말	정담회(情談會)
사정회/사정안	일본어식 조어표현으로 생겨난 용어	평정회, 평가회/평정안
~계(届) 결석계, 휴학계 등	학사운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표현으로 일본에서 공문서를 지칭하는 ‘~とどけ(届)’를 그대로 옮긴 표현	신고서/신청서 결석신고(서), 휴학신청(서) 등
차렷/경례	‘차렷/경례’는 군대식 거식 경례로 일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일제 흔적	공수-인사/바른 자세-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고맙습니다.”
수학여행 /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수련회/소풍’은 일본에 조선인 학생들을 보내 일본문화를 익혀 민족정신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1907년부터 행해진 활동. 학교 현장에서는 문서상으로 ‘문화탐방’이나 ‘문화체험활동’ 등 여러 가지 대체용어로 많이 바뀌었으나, 교사나 학생들의 구어상 용어로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	문화탐방, 문화체험활동 등 (현장체험학습/리더십캠프)
백지동맹, 동맹휴학	우리나라 학생들의 일제에 대한 저항을 처벌했던 항목	삭제

## ○ 순화어(표현) 예시

연번	순화 대상 단어(표현)	원어	순화어 (표현)	연번	순화 대상 단어(표현)	원어	순화어 (표현)
1	가라	空, から	가짜	15	대절	貸切, かしきり	전세
2	개찰구	改札口, かいさつぐち	표 내는 곳	16	땃빵	てっぱん	우두머리
3	견본	見本, みほん	본보기	17	도합	都合, つごう	합계
4	고수부지	高水敷地, -しきち	둔치	18	땡땡이(무늬)	點點, てんてん	물방울(무늬)
5	고참	古參, こさん	선임(자), 선참(자)	19	명찰	名札, なふだ	이름표
6	곤색	紺色, こんいろ	감색(紺色), 진남색	20	무데뽀	無鐵砲, むてっぽう	막무가내
7	공구리	コンクリート	콘크리트	21	반입	搬入, はんにゅう	실어움
8	공란	空欄, くらん	빈칸	22	백묵	白墨は, くぼく	분필
9	기스	傷, きず	상처, 흠	23	분빠이	ぶんぱい	분배
10	납득	納得, なっとく	이해	24	뽀록나다	ぼろ나다	들통나다
11	내주	來周, らいしゅう	다음 주	25	사라	さら	접시
12	노견	路肩, ろかた	갓길	26	와꾸	わく	틀
13	단도리	段取, だんどり	단속	27	호출	呼出, よびだし	부름
14	당분간	當分間, うぶんかん	얼마 동안	28	회람	回覽, かいらん	돌려보기

※순화어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 관련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 최종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정보공개/통합자료실/민주시민교육과)참고  
(바로가기: <https://bit.ly/3uqCAH>)



## 1-2. 교가 지원, 학교歌 좋다 운영 계획(안)

# 「교가 지원 학교歌 좋다」 운영 계획(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I 추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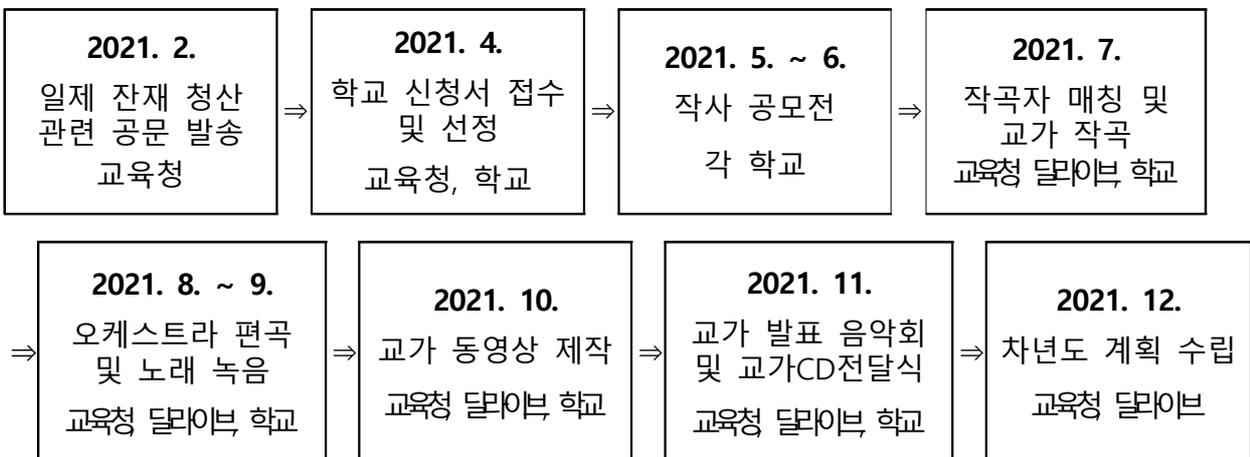
- 교가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공동체 의식 강화
- 교육공동체가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일제 잔재 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 II 추진 배경

-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학교 일제 잔재 청산 움직임 전개
- 서울시 초, 중, 고 중 다수의 학교가 일제 잔재 교가를 사용
- 딜라이브의 ‘학교歌 좋다’ 사회공헌사업과 협력을 통한 새 교가 지원

## III 추진 경과 및 일정

- 딜라이브와 협의: 2021. 1. 4. ~ 1. 20.
- 교육청 내 의견 수렴: 2021. 1. 18. ~ 1. 29.
- 추진 일정(안)



## IV

### 세부 계획(안)

- 교가 지원 사업 「**학교歌 좋다**」 공동기획 및 운영
- 대상: 서울시 초·중·고 중 15교 선정
- **협약 내용1: 교가 작곡 지원**
  - 학교 자체 페스티벌을 통한 작사 진행
  - 전문 작곡가 매칭(※학교 교사, 졸업생, 재학생 작곡도 가능)
- **협약 내용2: 교가 CD 제작 지원**
  - 새 교가 오케스트라 편곡 및 녹음, 합창단 노래 녹음
  - 음원 파일 4종 제작: 교가 반주(1절, 전곡), 교가 반주+노래(1절, 전곡)
  - 교가 동영상 제작: 학교에서 제공한 사진 등으로 교가 동영상 제작
  - 교가 악보 제작: 오케스트라 교가 악보 제공
- **협약 내용3: 교가 발표 음악회 및 교가 CD 전달식**
  - 행사명: **학교歌 좋다 음악회**(예시)
  - 일시 및 장소: 11월 중, 장소 추후 확정
  - 참석자: 선정 학교 소속 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 약 700명
  - 내용: 교가 발표(선정된 15교 참가, 재학생들이 직접 교가 부르기)  
교가 CD전달식,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및 가수들의 축하 공연





## 참고자료2. 2020 하반기 학교 생활 속 일제 잔재 용어 사용 조사 결과

# 학교 생활 속 일제 잔재 용어 사용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I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제7684호, 2020.9.15)
- 2020 민주시민교육 기본으로서의 역사교육 계획 (민주시민교육과-4531, 2020. 2. 28.)
- 국정감사 정청래 의원 요구 자료 제출(2020. 10. 15.)

## II 추진 목적

- 학교생활을 포함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잔존하는 일제 식민지 시기 유·무형의 일제 잔재 요소를 전수 조사 필요 제기 등 사전 진단
-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의 용어 사용 현황 파악을 통해 일제 잔재 청산 활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 기획 근거 자료 활용

## III 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

### □ 조사 개요

- 기간: 2020. 10. 21.(수) ~ 10. 27.(화)
- 목적: 학교 일제 잔재 용어 순화 사용 현황 파악
- 대상: 초·중·고 전체
  - ※조사 대상 4개 용어(차려/차렷, 경례, 훈화, 반장 등)는 의원 제안 용어
  - ※순화 사용 현황을 조사 후 향후 일제 잔재 청산 계획 수립에 반영
- 결과 활용
  -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추진 사전 현황 파악 활용
  - 2021년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기획(안)에 반영
  - 일제 잔재 용어 사용 제한 안내 등 사업 추진 근거 자료 활용

## □ 결과 분석

###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일제 잔재 용어 순화 사용 현황

[2020. 10. 27. 기준]

급별	응답 학교수 (단위교)	차렷		경례		훈화		반장		4가지 용어 모두 순화
		순화 사용	그대로 사용	순화 사용	그대로 사용	순화 사용	그대로 사용	순화 사용	그대로 사용	
초 (603)	578	<b>64%</b>	36%	<b>90%</b>	10%	<b>90%</b>	10%	<b>84%</b>	16%	<b>49%</b>
중 (388)	356	<b>67%</b>	33%	<b>84%</b>	16%	<b>87%</b>	13%	<b>83%</b>	17%	<b>53%</b>
고 (340)	289	<b>70%</b>	30%	<b>84%</b>	16%	<b>81%</b>	19%	<b>80%</b>	20%	<b>55%</b>
전체 (1331)	934	<b>66%</b>	34%	<b>87%</b>	13%	<b>87%</b>	13%	<b>83%</b>	17%	<b>52%</b>

- 초등학교 95%, 중학교 91%, 고등학교 85%가 설문에 응답함
- 각 용어의 순화 사용율은 ‘경례’ 87%, ‘훈화’ 87%, ‘반장’ 83%, ‘차렷’ 66%으로 ‘차렷’ 용어의 순화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 내용 4가지 모든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9%, 중학교 53%, 고등학교 55%로 학교급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정책 반영

- 전체 사용 빈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일제 잔재 용어 사용 금지 등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학교 교육 및 홍보 자료 안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 일제 잔재 용어 청산에 주력할 필요 있음.
- 일상적 학교 생활 속 일제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한 학교의 자발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
-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별 용어 순화 사용 비율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학교급 맞춤형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함.